

# 중앙실험동물센터 규정

시행일 : 2023. 3.20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 중앙실험동물센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기관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실험동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센터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(센터의 목적 및 업무) 본 센터의 설립목적 및 업무는 아래와 같다.

① 센터는 본교에서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동물실험을 담당하고 동물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생산, 사육관리, 개발 및 계통 보존을 수행하여 생물의학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센터는 연구기반 조성 및 생물의학 관련 교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동물실험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지원
2.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
3. 시설 및 장비 관리
4. 센터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
5. 실험동물의 관리  
(공급, 사육, 검역, 감염예방, 순화, 사체관리 등)
6.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
7. 기타 본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제5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동물실험”이란 교육시험·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(製劑)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.

② “실험동물”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.

③ “동물실험시설”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을 말한다.

④ “연구자(이용자)”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본교 교원, 연구원 및 대학원생 중에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본 센터에서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

2. 대외 공동(협력)연구과제 수행자
3. 외부 협력기관(대학 및 연구소)의 연구과제 수행자

⑤ 기타 용어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준한다.

제6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중앙실험동물센터의 시설, 회의체, 연구자, 직원 및 실험동물에 적용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7조(조직)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사무실

제8조(센터장)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를 대표하고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설치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과 위원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기본운영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 예산 및 결산
3. 센터 시설의 변경 및 건립에 관한 사항
4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11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. 센터장이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임시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10인 내외를 센터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센터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 간사는 회의 안전 상정, 회의 운영 및 결과 통보 등 행정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2조(회의의 소집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 수당) 위원회는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, 자문료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사무실

#### 제14조(사무실)

- ① 센터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.
- ② 사무실에는 센터의 운영 및 행정을 위해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둔다.
-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, 실험동물기술원, 연구원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조교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④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며, 처우에 대한 부분은 담당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 인사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15조(직원)

- ①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모든 근무자를 지칭한다.
- ② 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법정의무교육(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)을 이수해야 한다.
- ③ 직원은 표준작업지침(이하 “SOP”라 한다)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.
- ④ 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자체 없이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- ⑤ 직원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센터의 장비 또는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- ⑥ 직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실험동물 질병관리, 미생물 모니터링, 수술마취·부검 등 수의학적 지원
  2. 실험, 채혈·투약·동물보정 등 기술 지원
  3. 냉동기 안전관리, 공조기 관리, 시설 및 실험기구 유지 관리
  4. 실험동물 사료 및 음수 공급, 깔집 교체, 케이지 세척 및 기구 멸균, 기타 시설 유지 관리

## 5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### 제5장 재정과 회계

제16조(이용료) ① 센터장은 교내·외의 연구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이용료는 사육관리비, 실험실 이용료, 실험장비 이용료, 실험공간 임대료 등으로 세분하여 정한다.

③ 각 시설의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다.

제17조(운영 재원)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① 본교 본부에서 지급하는 교비 지원금
-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
- ③ 외부기관의 기부금
- ④ 센터 이용료 등 기타 수익금

제18조(재정의 운용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센터장은 사업 시행 시, 매년 10월 중에 다음 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감사) 센터장은 사업내용과 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하여 교내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6장 폐소

제20조(폐소) ① 이 센터가 폐소될 경우에 그 자산은 경희대학교에 귀속하며, 자산의 처리방안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 후에 시행한다.

② 센터 폐소에 따른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에 정부 관련부처에 동물실험시설 및 LMO 연구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.

③ 센터 폐소 시 센터에서 취득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도 적절한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### 제7장 보칙

제2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2조(개정절차) 이 규정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운영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의 발의와 의결정족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개정된다.

### 부 칙

본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